

●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미국 도서관 진흥법의 성립*

I.

미합중국에서 도서관 진흥법¹⁾이 성립된 것은 1956년에 일이었다. 이 도서관 진흥법은 처음 농촌지역에 도서관 서비스를 보급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5년간의 시한법안이었으나 1960년 8월에 의회에서 기한이 1966년 6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그후 공립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방으로부터의 보조가 계속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확충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1964년에 도서관 봉사 및 건축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LSCA)가 제정되었다. 이때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제한이 철폐되고 도, 시에 대하여도 법이 적용받게 되어 도서관건설(Title II)도 보조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1966년과 1967년의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상호협력(Title III)과 시설 수용자 및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Title IV)에도 연방의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²⁾ 그후 1970년에 LSCA는 1976년 6월 말까지 연장되어, 1972년도 이후 Title IV는 폐지되고 Title I에 흡수하게 되었다.³⁾

1956년의 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연방의 보조금은 연 750만불을 한도로 하고 있었으나 1961년~1964년도는 실제로 한도액의 전부를 지출하였다. 1965년도 이후는 보조금의 지출이 제1표와 같이 대폭 증액되었다.

1972년도의 5,870만불은 환어음비율로 환산하면 약 160억엔이 되며 일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의 약 20배의 액수가 된다.

1957년도에서 64년도까지 보조합계는 5,040만불이며 거기에 뒤이은 8년간의 분을 합산

* 1986년에는 한국도서관법의 개정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각국의 도서관법제정 과정과 배경을 최신의 자료는 아니지만 본지에 수록하여 참고하고자 번역하여 게재하는 바임.

森耕一(京都大學教育學部) 도서관학회연보 Vol.23 No.3 Dec.1977

- 1) Library Services Act. 직역한다면 「도서관봉사법」이지만 그 정신을 감안해서 「도서관진흥법」이라 칭한다.
- 2) Igoe, James G. "Federal grants and public libraries."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3(1972) p.138.
- 3) Krettek, Germaine "Library ligation, federal."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5(1975) p.341.

하며는 16년간의 연방보조금의 누계는 5억 400만불이라는 거액에 이른다. 실제로 보조금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만약 이 금액을 그대로 도서 구입에 충당하였다고 하면 5불의 도서를 1억책을 살 수가 있게되며 그것은 국민1인당 0.5책에 해당된다.⁴⁾ 일본의 전 공립도서관의 장서는 국민1인당 0.42 책인 것이다. (1975년도말)

제 1 표 연방보조금

(단위 : 백만불)

년도	Title I	II	III	IV A	IV B	계
1965	25.0	30.0	—	—	—	55.0
1966	25.0	30.0	—	—	—	55.0
1967	35.0	40.0	0.4	0.4	0.3	76.1
1968	35.0	27.2	2.3	2.0	1.3	67.8
1969	35.0	9.2	2.3	2.1	1.3	49.9
1970	29.8	7.8	2.3	2.1	1.3	43.3
1971	35.0	7.1	2.3	2.1	1.3	47.8
1972	46.6	9.5	2.6	—	—	58.7
계	266.4	160.8	12.2	8.7	5.5	453.6

본고는 미국도서관의 최근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1956년도의 도서관 진흥법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 배경과 결과를 알고자 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2.

공립도서관은 우선 도시에 있어서 발전하였다. 이에 비하여 농촌의 도서관 발달은 현저히 뒤지고 있었기보다는 아예 공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1936년 가을 카네기 재단의 초대로 미국과 카나다의 도서관을 두루 시찰한 Wilhelm Munthe는 “도서관이 있는 지역보다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면적이 더 많고 미합중의 인구중 5분의 2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⁵⁾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 도서관계에 있어서 공립도서관의 편재(偏在)는 해결이 되어야 할 커다란 과제에 하나였었다. 그래서 1939년에는 이 문제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연방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⁶⁾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제2차 대전으로 중단되어 전후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1945년 10월 1일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연방의회와 접촉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ALA의 연방관계위원회 위원장 Paul Howard(후에 내무성 도서관장)가 초대 소장에 취임하였다.

4) Igoe, *op. cit.*, p. 139—40.

5) Munthe, Wilhelm. *American Librarianship from a European Angl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9. (Reprinted by Shoe String Press. 1964) p. 20.

6) Daniel, Hawthorne. *Public libraries for everyone*. Garden City, N.Y.: Doubleday, 1961. p. 35, 38.

Howard는 의회도서관 입법 참고부의 조력을 얻어 도서관 진흥법(Public Library Demonstration Bill)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다.⁷⁾ 그가 다음에 할 일은 위원중에서 법안의 제안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설득하는 일이었다. ALA의 사무국장 Carl Milam(1920년부터 48년까지 사무국장 역임)은 하원의 Emily Taft Douglas⁸⁾(아리노이주 선출)를 그리고 알라바마주 도서관 위원회의 Lois Green 위원장은 상원의 Lester Hill(알라바마주 선출)에게 각각 그 뜻을 암시하여 일러주었다. 1946년 1월 Howard는 이 두 사람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각각 제안자가 되어주겠다는 승락을 얻어냈다.

1946년 3월 12일 상, 하 양원의 도서관 진흥법안이 제출되었다. 상원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복지위원회에서 호의적으로 보고 되었고 하원에서는 교육소위원회에서 호의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제79의회가 해산되기까지 그 이상의 진전은 하지 못했다.

법안은 상원에서는 재차 제80의회에 제출되어 1948년 2월에 가결되었으나 하원에서는 소위원회에서 호의적으로 보고되는데 그쳤다.

제81의회에는 하원에서 인디아나주의 Ray J.Madden 의원, 텍사스주의 Wright Patman 의원, 펜실바니아주의 Augustine B.Kelley 의원 등 3인이 법안의 제안자가 되었다. 이때는 교육노동위원회에서 이 심의 결과가 호의적으로 보고되어 하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 1950년 3월 9일 본 회의에서의 토론은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표결 결과는 161대 164표로 3표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제82, 83의회에서는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제84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18명의 의원이 제안자가 되고 하원에서는 27명의 의원에 의해 동일 내용의 도서관 진흥법안이 제출되었다.⁹⁾ 1955년 7월 26일 하원교육노동위원회는 20대 9로 법안이 수정없이 가결되었다.

3.

1956년 5월 8일 도서관 진흥법안이 하원의 본 회의에 상정되었다. 본 회의에 상정된 것은 6년만의 일이며 토론은 3시간 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우선 당시의 도서관 보급 상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증언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2,700만명이나 되며 5,300만명은 불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이며 합중국의 3,000여 군(郡) 중 가운데 44군은 공립이건 사립이건 간에 어떤 종류의 도서관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¹⁰⁾ 보고되었다.

도서관의 연간 경비에 대해서 말한다면 전국의 7,500 도서관 시스템 가운데 77%가

7) Daniel 에 의하면 1945년 봄에 완성되어 있었다.

8) 조작가 Lorado Taft 의 딸. 그녀는 그 당시에 은퇴하여 1947년 남편(부군)인 Paul H. Douglas 가 상원의원이 된다.

9) 상원에서는 복수의 의원이 연명으로 하나의 법안의 제안자가 되지만, 하원인 경우에는 "Identical bills"가 제출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동일내용의 것이더라도 개별적으로 제안하는 관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10) United States of America. *Congressional record*. vol. 102(1956) p. 7686.

10,000불 미만이며 60%는 4,000불 미만이다.¹¹⁾

사우즈다코타주에서는 68개군이 있는데 그 중 7개군만이 군립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17개군에는 공립도서관이 전혀 없다. 주 인구는 650,029인이나 그중 53%인 345,490인이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주 선출의 Berry 의원의 선거구는 23개군으로 이루어지나 그 중 3개군에 군립도서관이 있고 공립도서관이 2개관 있는 군이 1, 1개관 있는 군이 3, 나머지 13개군에는 공립도서관이 없다. 구내 인구는 158,147인으로 60%의 94,800인이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¹²⁾

교육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1946년에는 공립도서관이 전혀 없는 군이 661이었으나 1955년에는 404개군으로 줄어 들었다. 오레곤주 선출의 Coon 의원은 이 사실을 들어 연방 보조금이 없어 9년간에 257개군(38.8%)이나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립도서관 문제는 주와 자치체에서 개선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고 반박하였다. 더욱 기 404개군 가운데 388개군이 12개주에 걸쳐 있으며 268개군이 7개주에 집중되어 있다.¹³⁾ Coon 의원은 이와같이 도서관이 없는 군의 치우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州)의 노력이 부족함을 암암리에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각주의 인구1인당 도서관비를 조사해 보면 제2표와 같으며 매사추세스주의 1인당 2.10불은 텍사스주의 26센트의 8배가 된다.

제 2 표 도서관비¹⁴⁾

(단위 : 불)

Massachusetts	2.10
Ohio	1.77
New York	1.50
Indiana	1.14
Oregon	1.07
Missouri	1.00
Illinois	0.95
Virginia	0.33 -
Mississippi	0.30
Arkansas	0.27
Texas	0.26

Coon은 제2표의 숫자를 들은 후 “공립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州)와 지방이 다같이 관계되는 문제인 것이며 합중국 헌법에는 도서관에 관한 책임을 연방정부가

11) *Ibid.*

12) *Ibid.*, p. 7696.

13) *Ibid.*, p. 7688.

14) *Ibid.*, p. 7687.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 주의 책임

합중국 헌법 수정 제10조에는 「본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서 위임되지 않고 또 각주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은 권한은 각주가 스스로 혹은 주민에게 유보(留保)된다」고 되어 있다. 공립도서관에 대하여는 “합중국에 위임되지 않고” 또는 “각주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사항인 것 따라서 그것은 주 또는 자치체의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공립도서관의 일을 정하고 있는 것은 주법(州法)인 것이며 도서관에 관한 연방 입법이란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이다. 이 입법이 주에 대하여 간섭이란 반론은 미국의 전통에서 보면 오히려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다.

1950년 하원 본 회의에 매사추세스주의 Kennedy 의원(1953년부터 상원의원, 그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진정한 기능은 각주의 주민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것에 있다”¹⁶⁾.라고 말하고 법안에 반대하였다. 제84의회에서는 동주 선출의 Heselton 의원이 Kennedy의 말을 인용하여 이 방침이야말로 공화당이 여러해동안 추진해온 것이다¹⁷⁾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 책임이므로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되었다. 제2조(b)에서 말하기를

이 법안의 규정은 공립도서관 서비스실시에 관하고 주와 지방의 발의와 책임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공립도서관의 관리·직원채용, 도서와 도서관 자료의 선택 내지는 본법의 목적에 따르는 한 보조금의 사용용도의 결정은 주와 지방단체에게 유보된다.

이 조문에서도 보이듯이 이 법이 성립되었을 경우, 연방 보조금과 주 자치단체의 분담금을 합쳐 농촌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어떤 사업을 행사하는 가를 주에서 계획을 입안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제5조(a)에 있는 5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합중국 교육국장이 그것을 승인요건이라 한들 다시 무료원칙을 부르짖고 있는 이외에는 주로 사무수속상의 일인 것이다.

● 연방의 재정

제81의회시는 연방이 적자재정으로 공화당으로부터 재정의 유지에 힘써야만 하겠다고 반대론이 상당히 강하였다. 그러나 1956년에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대통령이 공화당임으로 인해 이 점에 관한 반대 의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단지 법안의 제안자나 지지자가 연 750만불이라는 것은 국방비, 기타와 비교할 때 소액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흥미 깊은 일이다. 비교의 하나로 해외의 USIS를 위해 1,470만불의 예산요구를 해온 것을 들고 있다.

오레곤주 선출의 Green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75만인의 장정(壯丁)의 교육부족

15) *Ibid.*, p. 7688.

16) *Congressional record*. vol. 96(1950) p. 3129

17) *Congressional record*. vol. 102, p. 7702.

(educational deficiencies)으로 불합격된 일, 징병 사무를 위해 매년 3,000만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52억 5,000만불, 알콜 음료에 88억 3,000만불, 영화에 12억 7,500만불, 츄잉껌에 2억불을 소비하고 있는 국가가 농촌지역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는 750만불 밖에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벵곤한 것이냐고¹⁸⁾ 하였다.

肯터키주 선출의 Parkins 의원은 B52 폭격기 1대의 전조비가 600만불이라고 지적하였다. 유도 미사일의 개발비가 연 20억불이며 그것은 연 750만불의 예산에 226년분 이라고 한다. 또한 750만불을 국민1인당 나누면 4.5센트에 지나지 않는다.¹⁹⁾

● 시한입법

법안 제안자는 또 시한법안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Coon은 “이 법률이 성립되면 연방정부의 항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²⁰⁾라고 경고하였다. 이제까지 시한법안이었던 것을 연장한 예는 종종 있어 왔던 것이다. 이것도 5년 기한이며 기한이 다 되어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하여 기간 연장의 탄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Coon이 예상한대로 였다.

● 부담의 불공평

제84의회시는 대세가 제안자들에게 유리하였으나 그중 완고히 반대한 사람은 뉴욕주 선출의 Gwinn 의원이었다. 그가 든 반대 이유의 하나는 주에 의한 부담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의 계산을 소개해 보면

뉴욕주는 연방에 납입한 세의 18.7%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성립되면 뉴욕주는 1,409,000불을 부담하게 된다. 이 법안에 의하여 보조금을 얻고자 한다면 그 것을 위해 주의 부담금이 425,000불로서 합계 1,834,000불을 지출하여 보조금으로 얻는 것은 249,000불이다. 결국 뉴욕주는 1불을 얻기위해 6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²¹⁾

매사추세스주 선출의 Curtis 의원도 불공평하다는 점으로 반대하였다.²²⁾

토론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의 Barden 의원이 “48주 중 46주가 입법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²³⁾고 말하고 있었으나 결국 부유하므로서 부담이 크고 이 법에서 얻어지는 것은 적어 뉴욕주와 매사추세스주의 의원이 최후까지 반대하였던 것이다.

4.

1956년 5월 8일 하원 본회의에 있어서의 토론은 상당히 장시간 걸렸으나 반대자는 극히 소수로서 결국 법안은 투표에 불임이 없이 가결되었다. 법안은 연이어 상원을 통과하고 동년 6월 19일 Eisenhower 대통령이 서명하여 도서관 진흥법은 발효되었다. 법안이

18) *Ibid.*, p. 7691

19) *Ibid.*, p. 7700—01.

20) *Ibid.*, p. 7688.

21) *Ibid.*, p. 7692.

22) *Ibid.*, p. 7701.

23) *Ibid.*, p. 7705.

최초로 의회에서 다루어진지 실로 10년후의 일인 것이다.

● 도서관 진흥법의 골자

이 법률의 목적은 아직까지 공립도서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그 서비스가 불충분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주에 의한 공립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을 촉진하는데 있다.

연방은 이 목적에 따른 주의 사업에 대하여 1957년(1956년 7월 1일부터 1957년 6월 30일까지)까지 5년간 매년 750만불을 한도로 하여 보조금을 지출한다. 보조금은 각 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만불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주의 농촌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어느 지역의 서비스가 충분한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주의 도서관 행정기관에서 정한다.

이 법률에 따른 사업 경비중에서 보조금이 점하는 율은 평균하여 5%가 되나 주의 빈부에 따라서 보조율이 변한다. 전국 평균을 50으로 하고 어느 주의 1인당 소득이 40이라고 한다면 주의 부담이 40% 연방의 보조금의 60%와 같이 결정된다. 그러나 보조율은 최고 60%까지이고 최저로는 33%로 정해져 있다.

또한 공립도서관의 정의로서 ALA의 것이²⁴⁾ 그대로 채용되어 농촌지역(rural area)에는 인구 1만명이상 지역(town)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 도서관 진흥법의 효과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우선 이법에 의해서 얻은 것이 적지 않다고 여겨지는 매사추세스주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도서관 진흥법이 설립한 시점에서 매사추세스주는 로드아일랜드주, 데라웨주와 같이 주내 전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밀할 수 있다. 매사추세스주 내의 351의 시의 행정구역은 스스로 도서관을 갖고 있고 그중 4개소에 대해서만은 주의 이동도서관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자치단체의 약 3분의 2는 인구의 1만인이 채 되지 않고 도서관의 예산도 빈약하였다. 1956년에 주내의 공립도서관 연보에는 반수이상이 예산 6000불 미만으로 개관시간은 주20시간 이하였었고²⁵⁾ 매사추세스주의 인구 1인당 도서관비는 전국에서 최고였으나 그것은 주내 다수의 부유한 도서관예산이 주 전체의 평균을 대폭 끌어 올려 놓은 결과로서 주내의 반수이상의 도서관이 ALA의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었던²⁶⁾ 것이다.

더우기 주내의 도서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빈곤한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는 콧트 지방에 새로운 광역 서비스를²⁷⁾ 계획하여 이에 대하여 45개 도서관에 앙케이트를 보낸 바 회답을 보내온 것은 25개관 일 뿐이고 그중 찬성은 겨우 7개관이고 18개관은 반대하고 있었다. 반대이유로 예를 들면 “현 상태로가 충분하다”라든가 “관공

24)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prepared by Elizabeth H. Thomps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3. p. 108.

25) Daniel, *op. cit.*, p. 51.

26) *Ibid.*, p. 83.

27) regional library service. 이런 경우 주내의 둘 이상의 County에 미치는 서비스.

서 기관이 증가하는데 반대한다”고 하는 것들이었다.²⁸⁾

공립도서관은 매사추세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실제 모든 자치체가 규모,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도서관을 갖고 있어 이 주 사람들은 자치체 정신이 왕성하여 주나군의 개입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였다.

매사추세스는 고도로 공업화된 주의 하나였으나 그렇다치더라도 주내의 과반수의 자치체가 진흥법에서 말하는 “rual area”였다. 주의 도서관국은 지방의 도서관위원회, 도서관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계획과 목표에 대하여 이해를 얻을 수 있겠금 힘썼다.

주는 이미 3개소에 광역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었으나 연방의 보조금을 얻게 되면서 주 동북부에 제4센터를 설치하고 이동도서관에 의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56년 까지 263의 자치체중 178이 예산을 증가하고 103단체에서는 급료가 증액되어 43단체가 개관시간을 연장하였다.

노스카로라이나주의 전 공립도서관의 발전상을 나타내는 통계²⁹⁾가 있다.

제 3 표 도서관비(세입)의 추이

연도	1956	1961	1966
도서관수	266	317	332
세 입			
시	755,604.34	1,165,933.31	1,486,528.59
도	918,662.40	1,564,831.90	2,880,057.84
주	390,000.00	472,272.00	621,250.00
연방	—	179,371.00	473,035.00
기타	252,470.62	322,373.19	496,311.33
총계	2,316,737.36	3,656,781.40	5,957,182.76
1 인당	0.57	0.80	1.31

1966년도 연방으로 부터의 보조금은 473,035불로서 도서관의 총 수입중에 점하는 율은 7.9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이 보조금이 「시작의 기틀」을 수행한 역할은 크다. 10년전의 1956년도와 비교하면 주내의 도서관비가 금액으로 364만불 2.57로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10년간의 장서는 62.6% 대출은 41.7%가 증가하고 있다.

28) Daniel, *op. cit.*, p. 81.

29) *Ibid.*, p. 83—84.

30) Mersel, Jules, et al. *An Overview of the 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Title I*. New York: R.R.Bowker, 1969. p. 103.

제 4 표 장서와 대출의 추이

	1956	1961	1966
도서책수	2,987,978	3,932,500	4,857,430
연간증가	248,129	305,289	349,830
대출책수	10,416,462	13,698,903	14,765,321

5.

최초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도서관 진흥법이 성립되기까지는 10년이 소요되었다. 그간 연방정부 자체는 정부 법안에 대하여 반드시 적극적은 아니였다. 1955년 5월 보건교육복지성은 농촌 도서관의 진흥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³¹⁾

농촌지역에 있어서 공립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찬의를 표한다. 그러나 예산에는 한도가 있어 교육 보건 분야에서 연방 자금에 대한 보다 진밀한 요구가 있으므로 이 법안이 우선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도서관 진흥법의 기한연장이 1960년 의회에서 심의되었을 때 정부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주었다.³²⁾ 도서관에 대한 행정의 이해를 얻는데는 무척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본다.

도서관 진흥법의 성립은 돌이켜 본다면 ALA의 진행부와 그 회원의 강하고 끈질김과 끊임없는 노력에 결과인 것이다. ALA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은 기타 관계자의 진지한 노력이 의회를 움직인 것이다.

우선 도서관의 책임직에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 현상에 대해서 보다 많이 의원에 이해를 구하고 입법에 대해서 협력을 얻는데 노력하였다. 제79의회에서 제84의회까지 진흥법안의 제안자로 된 의원의 수를 조사해 보면 제5표와 같다.

제 5 표 제안 의원수

회기	상원	하원
79	1	1
80	2	1
81	3	3
82	3	8
83	9	13
84	18	27

31) *Cong. record.* vol. 102., p. 7688.

32) Daniel, op. cit., p. 175. Krettek, *op. cit.*, p. 340.

매회 제안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제84의회시는 전회의 2배의 제안자를 획득하고 있다.

미국 정당은 일본이나 영국과 달라 “위원회에서 각위원 투표는 소속 정당의 선에 따르기보다는 제 각기의 선거구의 지방이해에 쫓아 행하여진다.”³³⁾고 한다. 상원에서 18명 하원에서 27명의 제안 의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각각 출신지역에서 설득 공작이 진행되어진 결과였을 것이다.

Frances P. Bolton 의원은 오와이오주 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4년도의 인구1인당 도서관비는 오와이오주의 15군에 있어서 50센트 미만이며 29군에 있어서는 50센트와 99센트 사이 였었다. 오와이오주의 88군이 대개 빈수의 도서관비가 1인당 1불 미만이었었다. 미국 도서관협회가 설정한 최저 기준은 1인당 1.5불이다. 이 기준은 1948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 후에 인플레를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오와이오주의 271의 공립도서관중 99개관의 운영비(1954년)가 7,000불 미만이었었다. 이 금액은 직원 1명에 인건비, 임차료, 광열비로 지불하고 적당한 양에 책을 구입하는데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³⁴⁾

이 외에도 수명의 의원이 본 회의에서 각각 자기를 주의 실정을 말하고 있다. 이를 데 이타는 주 도서관위원회라든가 도서관협회 등에서 진정을 받았을 때 입수한 것일 것이다.

알리바마주의 Elliott 의원은 도서관 부장과 같이 Regional Library 와 이동도서관에 동행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그에게는 그것이 inspiring 한 경험이었다고 한다.³⁵⁾

Coon 의원은 “이 법안의 배후에는 미국도서관협회로부터의 압력과 선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증거로는 어느 주의 도서관협회로부터 발송되어진 문서(1952년의 것)를 가르킨다.

의원을 설득하는데는 최초 편지에 대하여 편지의 회답이 어떠하든간에 계속해서 호소할 것. 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늦추면은 당신이 관심이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노력의 지속에 의하여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같은 문서를 입수하면 압력단체로서의 ALA 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다.

또한 Coon 은 위원회가 열린 공청회에서 이의 입법으로서 이익을 얻게되는 농촌지역의 사람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기대 내지는 지지의 요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³⁷⁾ 한다.

이의 지적은 도서관 운동에 가장 약한 점을 짚르고 있다. 현재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잇점을 대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

33) 斎藤 真『アメリカ現代史』山川出版社 1976 p. 180.

34) Cong. record. vol. 102., p. 7705.

35) Ibid., p. 7694.

36) Ibid., p. 7689.

37) Ibid.

도시와 그 근교에서는 이용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으므로 주민으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 집을 짓을 때 이사간 곳에 시·정(市·町)의 도서관이 없으므로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시작 한다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으로부터 도서관에 관한 요구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지역에 의한 도서관 서비스의 불평등을 부르짖는 것은 전문적으로서의 도서관원 밖에 없다.

Coon의 발언이 있은 잠시후에 오레곤주 선출의 Green 의원은 법안의 지지를 의뢰하는 오레곤 지사(공화당)로부터의 전보를 펼쳐 보이면서 부당한 압력이 아닐 것이다라고 마음을 달리 하였다.³⁸⁾

이것으로 보아서 도서관원들은 위원 뿐만 아니라 주지사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 주에 도서관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도서관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므로 도서관위원이 지사에게 말하여 그 지원을 의뢰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ALA는 교육노동관계의 전국적인 조직에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미국대학부인협회 FL-CIO, 유아교육협회, 부인구락부, 주교육장전국협의회, 전미교육협회, PTA전국회의, 전미농업자조합 등의 찬동을 얻었다. 신문도 이 법안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 뉴욕 타임즈는 1956년 5월 5일에 워싱턴 이브닝스라는 5월 7일에 법안의 성립을 희망하는 사설을 실었다.

이들 사실에서 말하고 있듯이 제안자중에는 민주당원도 공화당위원도 있어 이 법안이 초당파적인 것이었다는 것은 법 성립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였다.

38) *Ibid.*, p. 7691.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100 서울特別市 中区 會賢洞 1街 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752) 48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한국집진분류법<제 3판> (제 1권 본표·제2권 상판색인)	20,000원	비도서자료<이론과 실제>	5,000원
한국목록규칙<제 3판>	6,500원	고서분류목록법(상)	4,500원
도서관학개론	4,500원	한국도서관기준	3,500원
한국집진분류법해설	4,500원	선정도서목록(II)	2,500원
한국목록규칙해설	4,500원	선정도서목록(IV)	3,000원
도서관전산화입문	6,000원	한국도서관통계(1984)	4,000원